

제조혁신 이노비즈,
제조강국 대한민국

2024년 이노비즈기업 포상 공고(안)

2024. 1

INNOBIZ
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

I. 2024년 우수 이노비즈기업 시상식

- 행사명 : 2024년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우수 이노비즈기업 시상식
- 일시 : 2024. 3. 12(화), 17시
- 장소 : 호텔수성 컨벤션홀
- 대상 : 회원사, 이노비즈기업인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장 및 관련인사 150여명

II. 유공자 포상 개요

- 포상명 : 2024년 우수 이노비즈기업 포상
- 포상분야 : 일반부문, 특별상 부문
 - * 분야별 평가표 및 제출서류 상이
- 모집대상 : 중소기업 및 지원(유관)기관 임직원
 - * 분야별 세부 모집대상 상이
- 모집기간 : '24. 1. 29(수) ~ 2. 5(월) 18:00까지, 우편접수
- 접수방법
 - ① 협회로 한글파일 송부
 - 작성자료 한글(hwp)파일을 반드시 협회(innodaegu@hanmail.net)로 별도 송부
 - ② 원본 등기 접수
 - 원본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접수처
 - 우)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 -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협력관 3층 (42724)
 -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정세원 대리
 - TEL. 053-745-4706, E-mail: innodaegu@hanmail.n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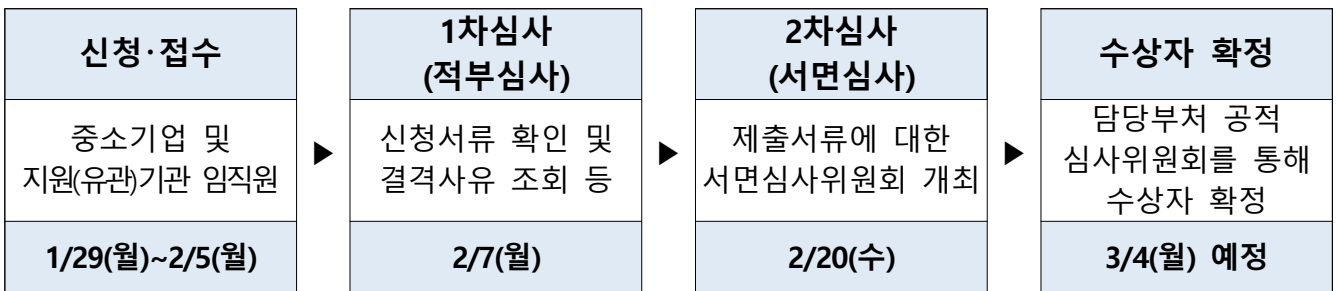
□ 포상규모 : 총 23점

구분	훈격	2024년 수여계획	비고
혁신 기업상	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	1	기업
	대구시장상	2	기업
	경상북도지사상	3	기업
우수 기업상	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	3	기업
	경북테크노파크원장상	2	기업
우수 기술인상	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	1	개인
이노비즈 특별상	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상	2	기업
	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상	2	기업
	대구지방조달청장상	1	기업
우수회원사 표창	협회장	3	기업
감사패	지회장	3	개인
합계		23	

※ 포상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음

□ 추진 일정 및 시상

○ 시상식 : '24. 3. 12(화), 호텔수성 컨벤션홀



□ 안내사항

- 모집기간 및 마감시간 필히 준수
 - 마감시간(2/5(월) 18:00) 이후, 제출 및 수정 절대 불가
-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작성한 공적조서 및 제출서류 평가
 - 분야별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 상이함으로 분야별 세부지침 필히 준수
 - 공적조서 내,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'0' 점 처리

[붙임] 정부포상 업무지침

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①

- ◆ 정부포상의 경우, 행정안전부 '정부포상 업무지침'을 준용하며, 그 외 기관 표창의 경우, 기관별 정해진 포상 기준을 따름
- ◆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상신청 기업(개인)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, 포상신청서 제출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포상기준

○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(국무총리 이상)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○ 중복 수여의 금지

- 상훈법 제4조(중복 수여의 금지),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(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)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

○ 재포상 금지 * 기준일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**훈장 7년 이상, 포장 5년 이상, 표창(대통령 및 국무총리) 3년 이상, 표창(장관) 2년 이상** 해당 분야에서 추천제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②

□ 추천제한

*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

○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○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*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*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○ 「상훈법」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③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 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 검색 - 사업보고서 -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
 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 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④

- 다만,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- 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(<https://www.share.go.kr>)
 - * 단,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)의 경우,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